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8 선고 2019가단3867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변론 종결2020. 8. 10.

판결 선고2020.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391,902원 및 그 중 93,669,520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여 D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2. 3. 15. 원고에게, 피고가 2010. 10월경 불건전 영업행위(불법 일임매매) 금지 행위를 저질러 D이 손해를 입었으니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10. D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4월경 개인회생 신청(서울회생법원 2012개회575)을 하여, 2012. 9. 10.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7. 7.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그리고 위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채권자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비록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한 면책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위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소정 비면책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이

취득하는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본다.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구상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D은, 피고가 2010. 10. 12. 고객인 E의 계좌에 대한 매매 주문시 E의 의사결정 없이 선물 20,872,677,500원, 옵션 14,671,586,000원을 임의매매하여 E에게 201,190,860원의 손실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E은 '위 사고 당일 피고에게 주문지시를 하여 피고가 그 주문을 이행하던 중 주문 수량 입력 실수로 주문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으로부터 거래에 대한 의뢰를 받기는 하였으나 과실로 그 수량을 잘못 입력하여 결국 의뢰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D은 2010. 12월 피고에 대한 징계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소정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결의하였다. 그런데 그 징계의결 과정에서 2010. 12. 1. 작성된 장계조치(안)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함이 원칙이나, 피고가 중과실로 그와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를 자진 신고하였으며 감독자가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D의 내부 징계절차에서도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뿐, 피고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상민